

인쇄문화산업진흥법

1월 20일부터 발효

제4장 12조와 부칙으로 구성

인쇄문화산업진흥법 (법률 제8532호) 전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·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인쇄”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·사진·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·천·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(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) 등에 실어 복제·생산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인쇄물”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·생산된 것을 말한다.
- “인쇄사”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·물적 시설을 말한다.
- “인쇄문화산업”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.
- “인쇄문화산업단지”는 인쇄사, 대학, 연구소, 단체, 개인 등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의 향상·발전을 위하여 인쇄물의 공동제작, 정보교환, 기술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·건물·시설의 집합체로서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문화산업단지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전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(直指)[세계 최고(最古)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(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)을 말한다]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

제5조(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“진흥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
-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
- 국제교류·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
-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
- 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
-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
- 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

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

인쇄업계의 숙원으로 대한인쇄문화협회,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,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김재윤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1월 20일부터 발효된다. 동 법은 제4장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진흥을 위해 매 5년마다 진흥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직지심체요절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인쇄진흥을 위한 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. 이와 함께 진흥계획에는 ▲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▲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▲국제교류·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▲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 사업의 지원 ▲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 ▲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▲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을 담고 있다. 다음은 법 전문과 2007년 1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전문이다.

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창업 및 시설·유통의 현대화지원)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지원의 대상·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전문인력 양성의 지원)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(이하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「문화산업 진흥 기본법」 제1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문화산업”은 이를 “인쇄문화산업”으로 본다.

제8조(국제교류의 지원)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·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)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·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

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·개발, 인쇄물 제작,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「문화산업 진흥 기본법」 제21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) ①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인쇄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.

⑤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인쇄사의 신고 등

제12조(신고) ①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1. 인쇄사의 명칭·소재지

2. 경영자(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)의 주

소·성명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(이하 “신고”라 한다)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 사항을 시·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신고필증의 반납)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5조(과태료)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부과권자”라 한다)이 부과·징수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쇄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출판 및 인쇄진흥법」에 따라 신고한 인쇄사는 이 법에 따른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출판·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출판 및 인쇄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수립된 “출판·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인쇄와 관련된 부분”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“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”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출판 및 인쇄진흥법」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쇄시설) 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물적 시설”이란 평판인쇄기, 활판인쇄기, 그라비어인쇄기, 플렉소인쇄기, 스크린인쇄기, 디지털인쇄기, 공판인쇄기, 조판시설, 제판시설, 제책시설, 인쇄 후 가공시설,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말한다.

제3조(시설·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)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(印刷社)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홀로그램 및 전자칠판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·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
2.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
3.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

제4조(국제교류의 지원 대상)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
2.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
3. 인쇄물의 해외 마케팅
4. 그 밖에 인쇄문화의 국제교류 증진

제5조(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)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체(書體) 연구 및 개발사업
2. 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
3.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의 생산 표준화 연구사업

4. 그 밖에 인쇄물 품질향상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

제6조(지원 절차)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별 제11조에 따른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7조(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.

1.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자
2. 인쇄 및 출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
3. 인쇄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의견의 청취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12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 세칙)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신고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따른다.

제15조(변경신고)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

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신고필증의 발급)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.

제17조(신고상황의 보고)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제18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부과권자”라 한다)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·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
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방법과 이의제기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